

수원지방법원 2023. 2. 8 선고 2022가단52183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월 담당변호사 류인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배수진, 손상우

변 론 종 결 2022. 12. 21.

판 결 선 고 2023. 2. 8.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20. 6. 12. 접수 제1112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1. 12.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던 D과 F센터 냉장창고 중 150평에 관한 분양권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D은 2019. 1. 23. 원고에게 ‘2019. 3. 12.까지 위 냉장창고 착공을 하지 못할 경우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D이 2019. 3. 12.까지 위 냉장창고 착공을 하지 못하자 원고는 D을 상대로 위 확약서에 기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1. 2. 10. ‘D은 원고에게 2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21. 3. 6.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이라 한다).

다. D은 2020. 6. 12.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피고가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D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른 것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D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주식회사 E의 지분 등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는 부부재산 관리의 편의를 위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 원고와 D 사이의 채권채무관계 등에 대해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D이 2억 8,000만 원의 이 사건 약정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D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이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주식회사 E의 지분 등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3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주식회사 E의 주식 5,10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위 주식이 적어도 28억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21. 12. 27. D의 위 주식을 압류하자 주식회사 E은 위 주식에 관하여 G, H, I가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고, 주식회사 E이 13억 원, 주식회사 J이 1,204,520,548원, 주식회사 K이 963,778,083원의 청구채권으로 압류하였다고 답변한 점, ② 피고는 D이 L에 대하여 7억 원의 계약금 반환채권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L은 D에게 위 7억 원에서 손해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반환할 생각이 있다고 할 뿐인 점, ③ 주식회사 J이 D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1. 10. 28. 'D은 주식회사 J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주식회사 K이 D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D은 주식회사 K에게 8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의 선의 여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어 피고가 이 사건 증여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운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용인시 수지구 동
 [도로명주소] 용인시 수지구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84.99㎡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용인시 수지구 대 70236㎡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80236분의 52.4792.

갑구 제7번 공유자 지분 2분의 1 -이상-

